

# 친일파 최 린을 애국자로 만든 위서

위서의 사회사 — 15

김삼웅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최 린은 3·1 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 후 천도 교회 명의로 비행기를 일본군에 헌납하는 등 친일로 돌아서 해방 후 반민특위 법정에 섰다. 해방 직후에 나온 『반민자공판기』는 최 린의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1971년에 나온 『여암문집』에 실린 공판기록은 법정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공판기록을 마치 애국자의 인터뷰기사처럼 미화시켰던 것이다.

3·1 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대표적 변절자는 최 린(崔麟)이다. 3·1운동 준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그의 변절행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최 린은 중추원 칙임참의에 이어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조선 임전보국단 회장,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사장 등 '수괴급' 친일행위자다. 천도교 장로로 있을 때 천도교회 명의로 비행기 한대를 일본군에 헌납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방 후 반민특위 법정에 선 것은 당연했다. 해방 직후에 나온 『반민자공판기』는 최 린의 재판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반민자 최 린에 대한 제1회 공판은 30일 하오 12시 54분부터 개정되었다. 특히 최 린은 3·1운동 시 독립선언서에 날인한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공교롭게도 법정 전면에 염숙히 걸려 있는 독립선언서는 응변적으로 최 린을 모욕하고 있는 듯… 그 당시 33인 중의 또 한 사람인 오세창 용의 '민족정기(民族正氣)'라는 글월이 최 린으로 하여금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회색 두루마기에 백발을 날리며 최 린, 재판장 앞으로 가까이 나섰다.

**재판장** 피고의 학력은?

**피고인** 별로 변변치 않습니다. (중략)

**재판장** 민족문제와 국가문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피고인** (중략)

**재판장** 기미운동의 취지를 어떻게 보는가?

**피고인** 철두철미 독립운동이며 혁명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기미운동의 감상은?

**피고인** 어떠한 당파운동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혁명운동

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장** 3·1운동 당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피고인** 죄를 진 나 같은 놈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피고인** 눈물을 흘린다. (하략)

이상은 최 린의 공판기록을 발췌한 것이다. 짧은 글에서도 당시 최 린의 공판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여암문집』에 실린 반민특위 공판기록 위작돼

최 린의 호는 여암(如庵)이다. 그가 6·25전쟁 와중에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남한에서는 친일행적 때문인지 잊혀진 존재로 치부됐다. 그러나 아니었다. 1971년 7월 14일 "선생께서 폐답되신 21주년을 맞으며 여암 최 린 선생 문집편찬위원회(편집위원장 이응진)"가 소리소문 없이 『여암문집(如庵文集)』 상하 두권을 편찬했다.

자세한 책소개를 할 지면은 없고, 여기에 실린 반민특위 공판 기록이 크게 위작됐음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반민자공판기』를 발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암문집』 하권에 주동림(朱東林)이 쓴 <선생을 사모하는 마음>의 글 가운데 네번째 "반민법 공판을 방청한 기억"은 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위서다.

"『신인간』 1962년 4월호에서 전재"했다는 문집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948년 5·10선거 이후 8월에 정부가 수립되어 국회는 제1성으로 반민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 반민재판을 공개한다고 하였다. 반민법에 해당한 피의자는 일제시대에 고급관리로 있던 국내인사들이니 여암 선생은 일제 말기에 관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혐의다.

여암 선생을 담당한 검사는 서성달이오, 판사는 서순영이었다.

이때 법정 내외에는 입주의 여지가 없이 인파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이날 공판에서 필자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주요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사가 묻기를,

“피고는 33인 중 천도교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가요?”

답 33인은 모두 민족대표로 된 것이지 종교별의 대표가 아닙니다.

문 피고는 민족대표 한 사람으로 반민법 공판에 대한 감상이 어떠하며 판선 참의원이 되기까지 유리한 증거를 진술해보시오.

답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 법대로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한가지 진술할 것은 반민행위에 대한 자들의 죄목을 엄정하게 다스리기 위하여 그 죄상을 모두 우리에게만 씌워 놓으면 왜놈에게는 아무런 죄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니 이것은 민족청사에 오점이 될까 염려됩니다(이때 방청석에서 ‘으아!’ 소리가 일어났다).

문 피고가 판선 참의원을 맡게 된 동기는 당시 총독부 관리였던 김대우의 권유로 승낙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그것은 이 죄 린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말입니다. 죄 린의 행동이 일개 서생의 설복에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판선 참의에 대한 경위는 남(南)총독이나 우항(宇恒)이 아니면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참의원이 되었던 나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죄의 경중을 변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방청석에서 또 ‘으아!’ 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판사가 “노인이니 의자에 앉아서 대답하시오” 하고 정리(廷吏)를 시켜 의자를 권하였으나 선생은 사양하시었고 판사가 또 “노인이 목이 마르실 텐데” 하고 차를 권하였으나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 앞에 놓으실 뿐이오 한 모금도 들지 아니 하시었다. 이 광경을 본 방청석에서는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과연 거물이야” 하고 수군거리었다.

판사가 서기를 시키어 《매일신보》에 선생님의 명의로 게재된 기사를 낭독케 한 후,

문 이 기사를 피고가 쓴 기억이 있는가요?

답 책임지겠습니다. 기억은 있으나 읽은 내용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문 그러니까 친히 쓴 글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아무리 사적인 친분관계라 하더라도 반민자에 대한 공판기록을 마치 애국자의 인터뷰기사처럼 미화시켰다. 신성한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민족적 범죄인에게 “참 애국자이시다!”고 소리친 것으로 날조하는 등 철저하게 공판기록을 왜곡한 위서로 지목된다.”

답 그때 신문기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 혹 기자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신문기자 생활이란 지조 없는 생활인가 합니다.

판사가 15분간 휴정을 선언하였으나 방청석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긴장하였으며 휴식 시간에도 선생님은 단정하게 의자에 앉아 계실 뿐, 한번 방청석을 돌아보는 일도 없으시었다.

판사가 다시 개정을 선언한 후.

문 피고가 구미양행을 한 동기와 의도는 무엇이었던가요.

답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생활양식을 밖에 나가서 들여다 보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문 여비와 여행수속은 어떻게 한 것인가요?

답 여비는 천도교회의 보조를 받은 것이요, 여행수속은 일본인 판본(板本)이라는 귀족원의원 주선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문 미국 가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보셨나요?

답 재미 교포들 초대연 석상에서 안도산을 비롯하여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 등 몇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문 그 다음은….

답 불란서와 영국에 가서 정치학자 몇 사람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배석 판사 “그때에 세계 약소민족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 무슨 말씀한 일은 없었던가요?

답 조선독립 없이는 동양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 그 다음 중요한 곳은 어디 어디에 들렀습니까?

답 소련에 들렀을 때에 그들이 문기를 “조선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는 집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선 집부터 지어놓고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일에 대한 것은 앞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중략)

문 당시 국내에서 신간회에는 왜 관계가 없었던가요?

답 불란서에 갔을 때 세계 사조가 두 조류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정치와 혁명을 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때 우리 민족에게 혁명사상이 필요한 것인가?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밖에도 선생이 일본 유학시절에 모의국화 인형사건으로 전시장을 습격한 사실들을 판사가 문의하였으나 사실대로 요지만 대변하실 뿐 당신에 대한 자랑이나 변명은 일체 없으시었다. 방청석에서는 모두 혀를 차며 “참 애국자이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인사는 말하기를 “오늘 공판은 죄 린 선생의 반민행위를 공판하는 법정이라기보다 죄 린 선생의 정치강좌회이다” 하였고, 어떤 인사는 “민족의 교실이다” 하였다.

검사는 기소취하를 하여 선생님의 반민재판은 결국 ‘공소취하’가 되고 말았다.

#### 반민족행위자를 애국자처럼 미화해

아무리 사적인 친분관계라 하더라도 반민자에 대한 공판기록을 마치 애국자의 인터뷰기사처럼 미화시켰다. 신성한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민족적 범죄인에게 “참 애국자이시다!”고 소리친 것으로 날조하는 등 철저하게 공판기록을 왜곡한 위서로 지목된다. ■